

전주지방법원 2016. 11. 10 선고 2016나6319(본소), 2016나8230(반소) 판결

[구상금 · 청구이의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신용보증기금

피고(선정당사자 겸 반소원고), 피항소인C

변론 종결 2016. 10. 20.

판결 선고 2016. 11. 10.

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. 1. 8. 선고 2013가단22746 판결

환송전_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5나2099 판결

환송판결 대법원 2016. 7. 27. 선고 2016다216755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피고(선정당사자 겸 반소원고)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(반소피고)에게 162,081,609원과 그 중 21,791,308원에 대하여 2001. 10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(선정당사자 겸 반소원고) 및 선정자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(선정당사자 겸 반소원고)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본소: 주문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의 기재와 같다.

반소: 원고(반소피고, 이하 원고라고 한다)의 피고(선정당사자 겸 반소원고, 이하

피고(선정당사자)라고 한다] 및 선정자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2가단3294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80,036,003원과 그 중 21,791,308원에 대하여 2001. 10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[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은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].

[항소취지]

원고: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(선정당사자)는 선정자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2,045,606원을 지급하라.

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: 제1심 판결 중 피고(선정당사자) 패소부분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선정자 B, 피고(선정당사자)의 연대보증 하에 선정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(이하 '선정자회사'라고 한다)과 2000. 3. 9. 보증금액 129,600,000원, 보증기한 2002. 3. 8.까지(이하 '이 사건 ① 보증'이라 한다), 2000. 8. 11. 보증금액 192,000,000원, 보증기한 2001. 8. 10.까지(이하 '이 사건 ②보증'이라 한다)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, 선정자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(이하 '이 사건 대출'이라 한다)를 신용보증하였다.

나. 원고는 국민은행에 2001. 10. 12. 이 사건 ①보증에 기하여 105,323,256원을, 2002. 10. 10.

이 사건 ②보증에 기하여 45,165,7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다. 원고는 2002년경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(이 법원 2002가단32945)을 제기하였고, 이 법원은 2003. 6. 27. 변론을 종결한 후 2003. 7. 11.

"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,035,935원과 그 중 105,323,256원에 대하여 2001. 10. 12.부터, 45,165,789원에 대하여 2002. 10. 10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"는 판결(이하 '전소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03. 7. 29. 확정되었다.

라.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①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원금 105,323,256원에 대하여 2009. 2. 5. 53,872,968원, 2009. 3. 31. 56,880원, 2012. 8. 7. 29,602,100원 합계 83,531,948원을 회수하였고, 2005. 11. 23. 이 사건 ②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원금 45,165,789원 전액을 회수하였다.

마. 원고는 전소판결에 따른 소멸시효 완료기간이 가까워지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3. 7. 1.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구상금 지급의무의 성립(본소청구에 관한 판단)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원리금 합계 162,081,609원{= 이 사건 ① 보증의 대위변제 잔존 원금 21,791,308원(105,323,256원 - 83,531,948원) + 확정지연손해금 137,713,311원 +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남은 법적 절차비용 219,820원 + 위약금 2,357,170원)과 그 중 잔존 원금 21,791,30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1. 10. 12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(본소에 관한 항변과 동일한 내용이다)

1) 주장의 요지 가) 이 사건 대출은 선정자회사 소유의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담보부 여신이고,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은 위 부동산으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된 보증이다. 따라서 국민은행은 위

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회수할 수 없는 대출금에 한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를 하였다. 그렇다면 위 부동산으로 담보될 수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였더라도, 원고는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구상금, 지연손해금, 법적 절차비용, 위약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(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).

나) 또한 국민은행은 2002. 6. 26.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 349,141,562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 153,714,048원만을 배당받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받았다. 결국 원고는 자신의 잘못으로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(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).

다) 그렇다면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80,036,003원과 그 중 21,791,308원에 대하여 2001. 10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남아 있으므로, 원고의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 대한 전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.

2) 법리 가)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,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,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, 후소 법원으로서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(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61557 판결,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).

나) 또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은 청구이의 사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, 청구이의 소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한 집행권원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선행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.

3) 위 각 주장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판단 전소판결의 기판력의 기준이 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2003. 6. 27.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먼저 제1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,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위변제를 한 일시는 2001. 10. 12.(이 사건 ①보증)과 2002. 10. 10.(이 사건 ②보증)인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고, 이는 모두 전소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생긴 사유임이 명백한바, 그렇다면 후소 법원으로서 전소판결을 통해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, 즉 원고가 국민은행에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나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고,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도 없으며,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로서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이의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으므로, 제1주장은 이유 없다.

다음으로 제2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강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 2002. 6. 26.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이 역시 전소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생긴 사유임이 명백한바, 그렇다면 후소 법원으로서 전소판결을 통해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, 즉 원고가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고,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도 없으며,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로서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이의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으므로, 제2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4) 소결론 따라서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, 피고(선정당사자)에게 추가로 선정자들과 연대하여 82,045,606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, 피고(선정당사자)의 패소부분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다만 당심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점을 고려하여,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, 당심에서

제기된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방창현

판사한진희

판사정성화

별지